

# 戶口單子・准戶口에 대하여

崔 承 熙\*

- |          |         |
|----------|---------|
| I. 머리말   | II. 准戶口 |
| II. 戶口單子 | IV. 맺음말 |

## I. 머리말

古文書의 史料로서의 價値는 一次의인 것임에도 불구하고·지금까지 古文書의 이용은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도 誤判·誤釋된 것들이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의 古文書가 아직 정리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古文書에 대한 理解와 知識이 결여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學界에서 주로 이용된 古文書類는 土地文記·所志·立案·謄給·和會文記·戶口單子·准戶口·貢人文記·通文 등 10여종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수백종에 달하는 한국고문서에 비하면 극히 적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 중 戶口관계자료는 특히 社會史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이용되고 있다.

戶口관계자료에는 戶口單子(戶口申告書)·戶籍(帳籍)·准戶口(戶籍謄本)으로 구분할 수 있다. 戶口관계자료의 이용은 일제시대에 四方博·渡邊業志 등에서 비롯하였고 1970년대 이후 많은 學者에 의해서 이루어졌던바, 주로 大丘·蔚山·尙州·丹城 등지의 戶籍(帳籍)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戶口관계자료 중 戶籍(帳籍)은 「帳簿」類에 속하는 것이며, 戶口單子和 准戶口가 文書類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戶口單子·准戶口등 文書로서의 자료를 이용한 경우는 崔弘基·許興植氏등이며, 대개의 자료가 原文書가 아니라 族譜등에 轉載된 二次의인 자료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戶籍制度가 성립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실라통일기의 소위 民政文書 또는 帳籍은 戶籍이라기 보다는 村勢를 기록한 村籍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이것은 戶籍制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戶籍制度가 확립되었고, 그 원칙은 3년에 한차례 戶籍(帳籍)을 改修하는 것이었으며, 그 制度는 조선시대에 계속되었다.<sup>(1)</sup> 3년에 한차례 이루어지는 戶籍의 改修는 各戶에서 올리는 「戶口申告書」에 의하

\*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助教授

(1)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研究》서울大出版部, 1975.

되겠으며, 이 戶口申告書를 「戶口單子」(戶口單字라고도 쓴다)라고 한다. 成籍하는 해에 戶主가 戶口單子 2통을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 또는 色吏의 확인과 舊戶籍과의 대조를 거쳐 1部는 單子を 올린 戶主에게 還付되고 1部는 編戶하여 戶籍을 改修하는 資料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戶口單子是 일단 官에 의하여 舊戶籍과 대조·확인되어 제출자에게 還付되므로 准戶口的 效果도 없지 않으나, 어디까지나 申告用(報告用)文書이며, 따라서 뒤에 보이듯이 그 書式에 있어서도 확연히 구별된다.

한편 백성들은 訴訟時 또는 成籍時의 添付資料로서, 또는 奴婢所有(推刷)의 근거 資料로서, 또는 家門·身分의 證明 資料로서 또는 그밖의 경우와 필요에 의하여 戶籍謄本 또는 住民登錄謄本の 性格을 갖인 「准戶口」를 謄給받을 수 있다. 「准戶口」는 이미 成籍되어 있는 戶籍(臺帳)에 准(의거)하여 官府에서 謄給되는 文書이다. 따라서 戶口單子和 准戶口는 文書式이 다르다. 그러므로 家門에 따라서는 같은 해의 戶口單子和 准戶口를 함께 간직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sup>(2)</sup>

이처럼 戶口單子·戶籍·准戶口는 확연히 구별되는 資料로서, 混同되거나 誤用될 수 없는 것이다. 그중 戶籍의 경우는 戶口帳·戶口臺帳·戶籍臺帳·戶籍大帳·帳籍 등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戶口관계 資料를 이용하는 학자들 가운데 특히 戶口單子·准戶口등 文書類의 戶口資料를 이용하는 학자 중에 그 用語를 混用·誤用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다. 그 實例을 몇개 들어보면,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研究》(서울大出版部 1975)의 경우

- ① p. 29, 「兩班戶口를 三年마다 成籍하였는데 그 基本은 戶主가 作成한 戶籍이며」; 戶籍은 戶口單子로 해야 옳다.
- ② p. 29, 「每三年에 戶首가 提出한 戶口二本을」; 戶口→戶口單子
- ③ p. 42, 「家에서 保管하던 戶籍單子가 아니라」; 戶籍單子→戶口單子
- ④ p. 80, 「戶口成籍規式에 따라서 出給된 戶口單子를」; 戶口單子→准戶口
- ⑤ p. 89, 「准戶口式은 戶主에게 成給하는 戶口單子の 樣式이다」; 戶口單子→准戶口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亞細亞文化社, 1981)의 경우

- ① p. 5, 「이와는 달리 帳籍에서 對照하여 戶口單子를 작성하여 개인에게 돌려 주는」; 戶口單子→准戶口
- ② p. 5, 「帳籍을 對照한 准戶口單子」; 准戶口單子→准戶口. 「准戶口單子」라는 文書는 없다.
- ③ p. 136, 「다만 다른 單子戶籍에는」; 單子戶籍→准戶口. 「單子戶籍」이란 文書는 없다.
- ④ p. 122, 「이 호적을 교정하기에 앞서」; 호적→戶口單子

有井智徳 <李朝初期의 戶籍法について>(朝鮮學報 39·40輯 1966)의 경우

- ① p. 42, 「戶主に支給する 戶籍と」; 戶籍→戶口單子
- ② p. 62, 「この戶籍の成給について」; 戶籍→准戶口

(2) 本稿의 戶口單子 例 3 과 准戶口例 9 참조.

- ③ p. 62, 「戶主に支給される戶籍は」; 戶籍→准戶口  
 ④ p. 63, 「成給戶籍とは多少様式を異にしていた」; 成給戶籍→准戶口  
 ⑤ p. 63, 世宗實錄(世宗 10年 5月癸丑條)의 准戶口 成給規式에 대한 理解가 잘못되었고, 「一本粘連立案」의 (立)案=戶口案=戶籍과 같은 理解도 잘못된 것.

武田幸男 《朝鮮戶籍大帳の基礎的研究》(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83)의 경우

p. 15, 「新うたに成册をれた大帳に基いて, 戶主それぞれ新しい寫が出給をれる. 「戶口」, 「戶籍」あるいほ「民間戶籍」などといわれるが; 「戶口」・「戶籍」・「民間戶籍」은 모두 잘못되었고, 准戶口로 써야될 것이다.

朝鮮總督府, 《朝鮮史料集眞》의 경우

第1輯 圖版 19, 24의 戶口單子는 准戶口로 고쳐야 된다.

위에서 混用・誤用의 예를 몇개 들어보았지만 그 밖에도 무수히 많다. 이와같은 用語의 混用・誤用은 資料의 性格을 誤解・混同케 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실사 연구결과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用語와 概念의 定立은 學問의 기초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本稿에서는 戶口單子와 准戶口의 概念과 그 用語의 使用例, 文書式과 文書例를 들어 이 方面의 資料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되게 하고자 한다.

## II. 戶口單子

「單子」라는 用語에는 「甲이 乙에게 物品이나 일을 條目條目 別行으로 적어서(列書) 올리는 글」이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희승편 《국어대사전》에는 「부조동 남에게 보내는 물건의 수량과 보내는 사람의 성명을 적은 종이」라고 풀이 했으나, 「單子」라는 用語의 설명으로는 부족한 느낌을 준다. 「單子」라는 이름을 갖인 文書를 들어보면, 璿源錄世系單子・進上單子・署經單子・薦望單子・褒貶單子・下直單子・謝恩單子・六行單子・問安單子・祇受單子・處女單子・祭需單子・賻儀單子・四柱單子・戶口單子 등등 다양하며<sup>(3)</sup> 대개 관계되는 物品이나 事實을 조목조목 列書하여 올리는 文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所志」類에도 「單子」라는 文書樣式이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山訟관계로서, 山訟관계의 억울한 사정을 守令에게 陳情하는 文書이며<sup>(4)</sup> 「士夫以山訟事呈單子」・「待本官遞歸親呈營門單子」등의 書式을 볼 수 있다.<sup>(5)</sup> 이처럼 「單子」는 物品 또는 事實을 조목조목 적어 올리는 문서이며, 戶口單子는 바로 戶主(甲)가 戶口관계 事實을 列書하여 官(乙)에 올리는(신고하는) 문서인 것이다.

(3) 拙著, 《韓國右文書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4) 拙著 上揭書 p. 256 참조.

(5) 儒胥必知 참조.

「戶口單子」라는 用語를 사용한 예는 고려시대의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도 戶籍(帳籍)을 改修하기 위하여 戶主가 제출한 戶口申告書(戶口單子)가 있었을 것은 틀림 없다. 高麗史食貨志 戶口條에

舊制 兩班戶口 必於三年一成籍 一件藏於官 一件藏於家

라고 한 記錄중 「一件藏於家」가 바로 還付된 「戶口單子」라고 보겠다.

朝鮮이 開國되면서 戶籍의 作成은 곧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니<sup>(6)</sup> 「戶口單子」라는 用語는 太宗15年 12月 漢城府에서 「戶口式」을 올리는 啓에서 보인다. 즉

大小人員戶口成籍 定限舉案收納…戶口單字 收納定限 京中時散二品以至士庶人 來丙申年正月內畢收納 五月內畢成給 外方依上項例 八月內收納 十二月內畢成給何如 依允<sup>(7)</sup>

위의 자료에 의하면 大小人員의 戶口를 成籍하기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 戶口單字를 收納하였음을 볼 수 있다. 官府에서는 2부의 戶口單字를 收納한 후 이의 記載上의 錯誤與否와 舊戶籍·文契(家系를 증빙할 수 있는 文書) 등을 조사·확인한 후에 1부는 새 戶籍의 作成을 위한 자료로 쓰고 1부는 各戶(提出者)에 成給한 것으로 보인다. 漢城府에서 同日에 또 啓하기를

大小人員戶口單字收納 依受教 出榜督納(依允)

이러하여 戶口單字의 收納을 위하여 榜을 내붙이고 督納케한 사실을 볼 수 있다. 世宗 8年 12월에도 漢城府와 議政府·諸曹가 戶口成籍時의 未盡한 일들을 함께 의론하여 啓하는 중에도

外方出使及下番甲士受田無受田牌屬人 有家舍可以付京籍者 戶口單字及文案 令各道監司 督促上送 從之<sup>(8)</sup>

라 하였다. 즉 外方に 出使한 地方官과 下番중인 甲士·受田牌·無受田牌 등에 속한 사람으로서 漢城에 집이 있어서 京籍(漢城府戶籍)에 붙일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各道監司로 하여금 그들의 戶口單字와 文案(증빙문서)을 독촉하여 上送하도록하고 있다. 여기서도 戶口單字는 戶口申告書임에 틀림없다.

經國大典 禮典에는 「戶口式」과 「准戶口式」은 있으나 「戶口單子式」은 없다. 經國大典의 「文書式」에는 國王文書인 「教旨」과 王命을 받들어 官府에서 발급하는 文書 및 官府에서 發給하는 官府文書만이 있다. 즉 國王文書와 官府文書의 書式만이 있다. 그러므로 經國大典

(6) 崔弘基, 上揭書 pp. 73-74 참조.

(7) 太宗實錄 卷30 太宗 15年 12月 丙寅條

(8) 世宗實錄 卷34 世宗 8年 12月 庚申條

의 「戶口式」은 「戶口帳」에 記載되는 書式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記載內容(戶主와 그 四祖, 妻와 그 四祖등)이 列書되지 않고 連書되고 있다.

「戶口單子」式은 典律通補 別編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戶口單子式**

某部某坊某契戶口單子(外則稱某面某里)

第 統

第 戶住具銜姓名年幾某干支生本某

父具銜名 出系人列  
書生父

祖具銜名

曾祖具銜名

外祖具銜姓名本某

奉母某氏年幾某干支生籍某

妻某氏年幾某干支生籍某

父具銜名

祖具銜名

曾祖具銜名

外祖具銜姓名本某

率子女孫 若娶婦又低書○女婿並錄本 某某年幾某于支生  
貫○有率戶則列書附子孫下

率奴婢雇工某某年幾某干支生

年號幾年某月 日

典律通補는 18世紀後半에 편집된 것이나 그 이전부터 관행되어오던 戶口單子式의 반영으로 보겠다. 위의 戶口單子式에서는 그 末尾에 年號를 기재하였으나 이 시대의 戶口單子의 實例에서는 年號를 쓰는 일은 거의 없다.

戶口單子의 記載는 時代에 따라서 또는 地方에 따라서 혹은 家門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다. 매우 드물게는 准戶口式에 가깝게 戶口單子를 作成한 것도 볼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用紙의 크기, 官印의 有無 또는 官印 踏處의 수효, 書體 기타 요소로서 戶口單子 與否를 가려낼 수 있다.

〈戶口單子 例〉

〈例 1〉(光山金氏烏川古文書)<sup>(9)</sup>

金 積 平 酉  
□□戶口本貫化□府丁□年秋場製述

父士元  
□□□古名垣又古名元具

祖匡靖 圖司事  
□□□大夫僉議侍郎贊成事判版□□□ 贈諡號良簡公璉古名仲龍

曾祖追封金紫光祿大夫門下侍郎平章事判兵部事大鱗

(9)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光山金氏烏川古文書》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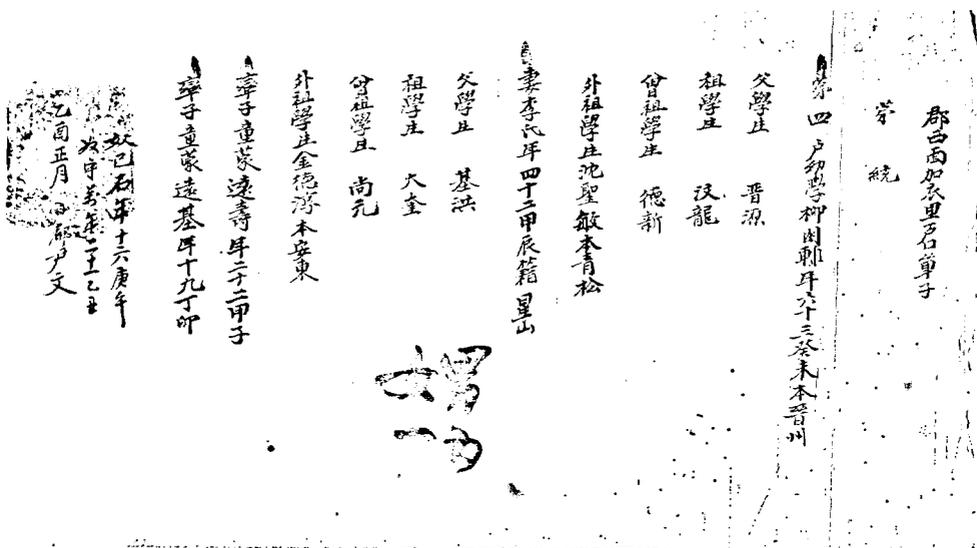
도판 1. 戶口單子 例 1

母  
 順政郡夫人安氏本貫興州故  
 外 司郎中儒  
 祖文宣王配享功臣宣授奉議大夫征東行中書省左右     學提舉匡靖大夫僉議中贊修文館大司學提  
圖司  
 修史判版   監察司事贈諡文成公安珣古名裕  
 妻永嘉郡夫人權氏年參拾玖本貫福州  
 父匡靖大夫僉議評理上護軍致仕權允明古名明準卒  
 祖追封銀青光祿大夫樞密院副使兵部尚書上將軍濟  
 曾祖追封兵部尚書上將軍得公  
 母永  
  嘉郡夫人金氏本貫安東府故  
 外祖  
  宣授中奉大夫都元帥推忠靖難定遠功臣匡定大夫三重大臣僉議中贊上將軍判典興司事世子師上洛公  
節付  
 贈諡忠烈公金方慶 并產壹男左右衛保勝散員光利年貳拾伍    
 妻元氏年貳拾肆本貫原州  
事上  
 父推佐理功臣重大臣僉議贊成事判軍簿司監察司   護軍元忠  
 (以下 省略)

위의 例 1 은 1333년에 作成된 戶主金禎의 戶口單子 寫本이다.<sup>(10)</sup> 이 자료는 비록 原本은 못되나 高麗時代의 戶口單子の 記載方式을 보여주는 좋은 例라고 생각된다. 이 戶口單子の 記載內容은 「戶主와 그 四祖·母」, 「戶主妻와 그 四祖·母」 「戶主의 子·子婦 및 子婦의 四祖·母·子의 并產(孫子女)」, 「戶主의 女·夫(婿) 및 女夫(婿)의 四祖·母·女夫의 并產

(10) 上揭書所載, 이 寫本은 安東 金俊植氏宅 所藏으로 毀損된 部分이 있으나 安東 光山金氏 雪月堂 金富倫後宗宅 所藏 烏川古家世蹟에 轉載되어 있는 戶籍에 의하여 채워넣을 수 있다. 그런데 이 寫本은 轉寫과정에서 原本의 상태가 좋지못하여 1333년에 作成된 金禎의 戶口單子와 1301년에 贈給된 金璉의 准戶口가 뒤섞여 있는 것을 잘못 轉寫했으나, 記載內容으로써 分辨할 수 있다 (拙著 上揭書 p. 225 참조)

(外孫子女)「戶主의 祖妻父와 그 四祖·母」, 「戶主의 曾祖와 그 父·祖」「戶主의 曾祖妻父」, 「戶主의 外祖父와 그 四祖·母」「戶主의 妻父 및 그 曾祖·外祖」, 戶主妻의 外祖 및 그 四祖·母」 등으로 그 推尋의 범위가 넓고, 특수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의 戶口單子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子女와 子女의 子女등은 連書를 하고 있으나 戶主와 戶口妻의 四祖·母, 子婦·子婦의 四祖·母, 女夫(婿)·女夫의 四祖·母등은 모두 列書(別行으로 씀)하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戶口單子の 列書하는 書式과 같다. 즉 고려시대에도 戶口單子是 列書를 원칙으로 한것이 아닌가 한다.



도판 2. 戶口單子 例 2

〈例 2〉(筆者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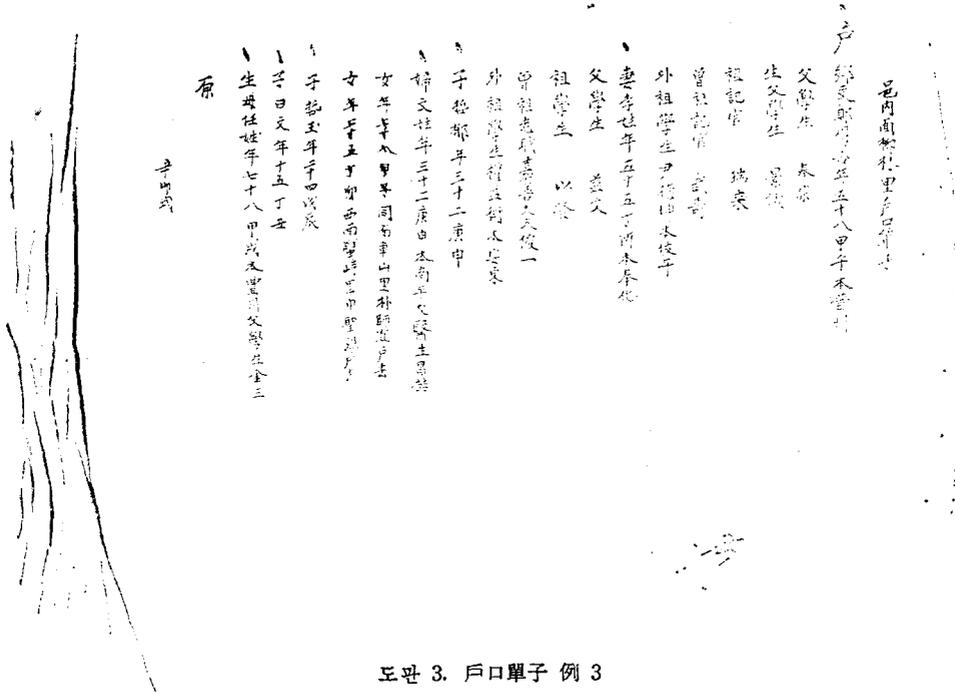
郡西面加衣里戶口單子

第 統

- 第四戶幼學柳困輔年六十三癸未本晉州
  - 父學生 晉源
  - 祖學生 汶龍
  - 曾祖學生 德新
  - 外祖學生沈聖敏本青松
- 妻李氏年四十二甲辰籍星山
  - 父學生 基洪
  - 祖學生 大奎                      男五
  - 曾祖學生 尙元                    女一
  - 外祖學生金德淳本安東
- 率子童蒙遠壽年二十二甲子
- 率子童蒙遠基年十九丁卯
  - 奴己石年十六庚午

· 奴守萬年二十一乙丑  
乙酉正月 日都尹文(官印 1個處)

위의 例 2 는 戶口單子式과 거의 일치하게 작성되었음을 볼수 있다. 戶主인 幻學柳困輔는 乙酉正月에 2部の 戶口單子를 제출하였고, 戶籍事務 擔當者인 都尹 文이 이를 확인·대조한 후 현재 살아 있는 사람 위에 朱點을 찍고 餘白에 男五·女一이라 男女人口數를 朱書로 쓰고, 제출년월인 乙酉正月 日 위에 官印(朱印) 1個를 찍은 후, 1部는 帳籍改修의 資料로 官에 保管하고 이 戶口單子는 戶主에게 還付한 것으로 보인다.



도판 3. 戶口單子 例 3

〈例 3〉(筆者)  
 邑內面柳林里戶口單子  
 · 戶鄉吏鄭得善年五十八甲午本晉州  
 父學生 奉宗  
 生父學生 景儀  
 祖記官 瑞來  
 曾祖記官 武壽  
 外祖學生尹德坤本坡平  
 · 妻李姓年五十五丁酉本奉化  
 父學生 益文  
 祖學生 以發  
 曾祖老職嘉善大夫俊一

共七口  
 四統五戶

- 外祖學生權益衡本安東
- 子哲郁年三十二庚申
  - 婦文姓年三十二庚申本南平父醫生昌喆
  - 女[年二十八甲子]同面車山里朴師直戶去
  - 女[年二十五丁卯]西面蟹峙里申聖烈戶去
  - 子哲玉年二十四戊辰
  - 子曰文年十五丁丑
  - 生母任姓年七十八甲戌本豐川父學生金三  
原
- 辛卯式

行縣令

위의 例 3 도 戶口單子式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뒤에 行縣令이라 記載했으나 縣令의 手決도 없고 官印도 없다. 이 戶口單子是 鄉吏鄭得善이 辛卯式年(1831)에 올린 것으로, 戶籍事務 擔當者는 이를 확인·대조한 후 現在 이 戶에 살고 있는 사람 위에 墨點을 찍고, 하단 여백에 「共七口」라 墨書하고 또 朱書로 「四統五戶」라 여백에 쓴 후에 戶主(제출자)에게 還付된 것이다. 女(딸) 2명은 前式年(1828)에는 率居하다가 그간 出嫁시켰으므로 家族數에 포함되지 않았고 나이도 지워버렸다. 이 戶口單子の 크기는 가로 68.5cm·세로 55cm로서, 같은해 同一戶主에게 准給(發給)된 准戶口(뒤 准戶口例 9 참조)의 32cm×35.7cm에 비하여 3.3배가 넓다. 일반적으로 戶口單子の 用紙의 크기는 准戶口의 用紙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다.

〈例 4〉(光山金氏烏川古文書所載)

雍正十年壬子戶口單子

- 第 戶通德郎金智元年四十五戊辰本光州
- 父通德郎 岱
- 祖學生 純義
- 曾祖學生 礪
- 外祖學生李玄逸本載寧
- 妻李氏年四十七丙寅籍月城
- 父通訓大夫司憲府持平 適意
- 祖通訓大夫行淮陽都護府使 崇彥
- 曾祖成均館學諭 徽音
- 外祖成均進士吳慶基本高敞
- 率女年二十癸巳子元瑞年十九甲午次子龜瑞年十三己亥次子麟瑞年十壬寅
- 率奴秩奴南金自戶奴金同年廿五戊子父私奴命先母班婢禮女(以下 奴婢 8口省略)

위의 例 4 는 戶口單子式을 거의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某面某里를 記載할 자리에 「雍正十年壬子」라고 戶口單子를 올린 해의 年號와 干支를 표시한 것이 다르다. 이 戶에 살고 있는 사람은 奴婢까지도 朱點을 찍어 人口數를 확인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下端이 잘려나가 家口數의 表示·戶籍擔當者의 記載·官印등의 有無與否는 확인 할수 없다.

雍正十年壬子戶口單子

戶通德即金智元年甲戌辰本光州

父通德即 岱

祖學生 純義 父

曾祖學生 礪

外祖學生李玄送本載寧

妻李氏年甲七丙寅籍月城

父通訓大夫司德府持平通意

祖通訓大夫行淮陽都護府使 宗彥

曾祖成均館學諭 徽音

外祖成均進士吳慶基本高敏

率子元瑞年十九甲午次子龜瑞年十三己亥次子麟瑞年十去官

率秋汝南全自戶次至同年廿五歲子父初及命先母惟尔礼女年二十

母班亦或七哩瑞年先甲戌父初及命全母班尔正花年五不年六已亥後

年五甲午未父初及命全母班尔正花年五不年六已亥後

年十三己亥父初及命全母班尔正花年五不年六已亥後

年什七力子父人林大原 母惟尔去美外



도판 5. 戶口單子 例 5

<例 5> (光山金氏烏川古文書)

第一邑內面第十一烏川里戶籍立帳

第 第 戶幼學金塾年六十四甲午本光州

父通德郎智元

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岱

曾祖贈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 純義

外祖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李適意本月城

妻李氏故籍眞城

父通德郎 仁兼 唱申祐壽

祖通德郎 口標 准李德老

曾祖通政大夫守忠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溟翼

外祖贈通政大夫吏曹參議金升國本光州

率子良弼年四十一丁巳

子婦李氏年四十一丁巳本慶興

次子良輔年三十四甲子

從子良漢年三十九己未

率奴檢吐里年六十四甲午母婢月今父奴東男

婢鳳眞年四十二丙辰母婢次娘父奴次乞

外居奴婢

奉化邑內居奴鄭業年甲戌母婢占香父不知

(以下 7口省略)

逃奴婢

靈山道河里居婢軟眞年丙子母婢卜春父奴崙男

婢分伊年甲戌母婢允九父奴英乃

(以下 奴婢 104口 省略)

行縣監(手決)

(官印 1 個處)

위의 例 5 는, 列書한 점이나 各行의 首字를 높이고 낮추고한 점등은 모두 戶口單子式에 일치한다. 그러나 「戶口單子」라고 記載하지 않고 「戶籍立帳」이라고 한것이 다르며, 또 後

尾에 「甲午戶口相準印」이라 하였고 行縣監의 手決을 받은 것은 戶口單子式에는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 家門에서는 「戶口單子」를 「戶籍立帳」 또는 「戶口立帳」으로 흔히 쓴 것을 볼 수 있으며, 後尾에 「某年(干支)戶口相準印」이라 記載한 것도 이 家門의 戶口單子에서 1820년대까지 계속된 것을 보면, 이와같은 記載는 이 家門의 貫例가 아니면 이 地方(禮安縣)의 貫例로 볼 수 있겠다. 例5에서 이 戶의 奴婢가운데 逃亡한 外居奴婢 106口에 대한 記載는 官의 認證을 받아 推刷할 目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唱申祐壽·准李德老」는 이 戶口單子를 확인·대조한 사람이며, 그 위에 官印 1個를 찍고 縣監의 手決을 받은 후 戶主金塾에게 還付된 것으로 생각된다. (1777년)

第一邑內面第十四下烏里 第 統 第 戶  
幼學金斗相年四十二壬午本光州

父學生 濟寧  
祖學生 行教  
曾祖學生 宗儒  
外祖學生李龜晦本眞寶  
妻柳氏年三十八丁亥本全州  
父學生 致誠  
祖學生 綱文  
曾祖學生 善休  
外祖學生李重鎔本韓州

主奴取行年三十四庚寅母婢月妻父三六廿九  
嫡取節年三十八丙戌父母上同  
奴漢斤年二十四庚申父母上同  
嫡主節年二十五庚申父母上同  
爲節年十六庚申父母上同  
雲發年五十四庚午母婢月妻父三六廿九  
云伊年三十五己丑母婢月妻父三六廿九  
孫伊年二十六戊戌父母上同  
孫伊年四十一庚子母婢月妻父三六廿九  
石女年三十五己丑母婢月妻父三六廿九  
連伊年四十八丙子母婢月妻父三六廿九  
天順年十八丙子母婢月妻父三六廿九  
承孫年十三辛亥母婢月妻父三六廿九

도판 6. 戶口單子 例 6

<例 6> (光山金氏烏川古文書)

第一邑內面第十四下烏里 第 統 第 戶

幼學金斗相年 四十三  
四十二 壬午本光州

父學生 濟寧

祖學生 行教

曾祖學生 宗儒

外祖學生李龜晦本眞寶

妻柳氏年 三十八  
三十七 丁亥本全州

父學生 致誠

祖學生 綱文  
曾祖學生 善休  
外祖學生李秉鉉本韓山

三十五  
率弟奎相年三十四 庚寅

率奴取斤年三十四庚寅母婢月每父良人朴允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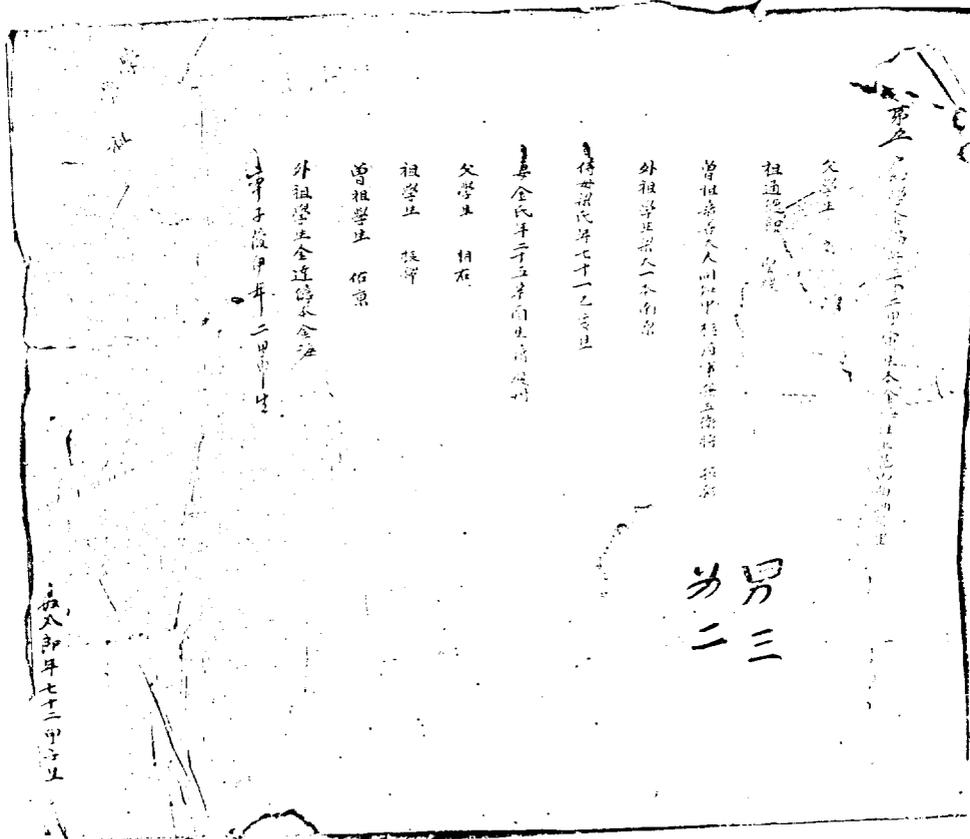
婢取節年三十八丙戌父母上同

(以下 奴婢 12口 省略)

위의 例 6 은 「某面某里」 다음에 「戶口單子」라 記載하지 않았고, 統·戶를 別行으로 하지 않고 連書한 것은 戶口單子式과 다르나 그 밖의 記載는 戶口單子式에 의하였다고 하겠다. 奴婢의 記載를 字行을 많이 낮추어 記載한 것이 눈에 띄지만, 그것은 흔히 볼수 있는 것이다. 年齡의 記載가 잘못되어 1년씩 올려서 고쳐놓은 것이 보이며, 담당자가 확인·대조한 후 官印을 下端 餘白에 찍고, 戶主에게 還付된 것으로 보인다. (1864년)

<例 7> (筆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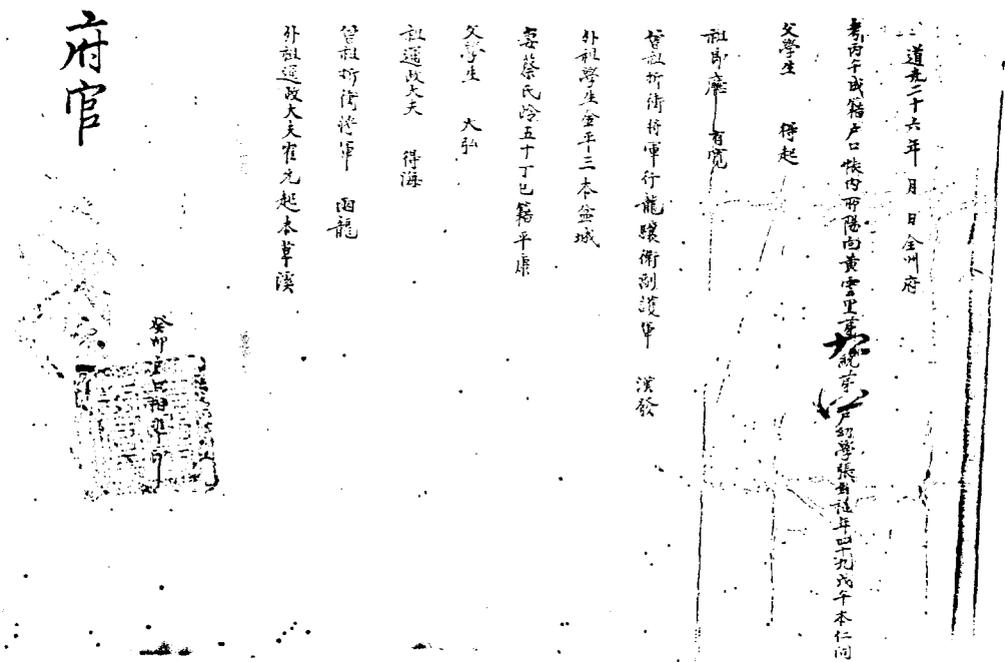
第五戶·幼學金滿年三十二甲寅生本金海住上邑內面訥捺里



도판 7. 戶口單子 例 7

父學生 商鐸 男三  
 祖通德郎 聖煥 女二  
 曾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振彩  
 外祖學生梁大一本南原  
 • 侍母梁氏年七十一乙亥生  
 • 妻金氏年二十五辛酉籍慶州  
 父學生 相右  
 祖學生 振鐸  
 曾祖學生 佑京  
 外祖學生金遠億本金海  
 • 率子俊伊年二甲申生  
 • 奴太郎年七十二甲子生

위의 例7에서는 「某面某里戶口單子」라 記載하지 않고, 「某面某里」를 戶主관계 記載 뒤에 連書한 것이 「戶口單子式」과 다르다. 戶籍事務 담당자는 이 戶口單子를 확인·대조하고 생존한 사람위에 朱點을 치고, 「男三·女二」라 人口의 男女數를 朱書하고 官印을 한 곳에 찍은 후, 提出者(戶主)에게 還付한 것이다. (가로 58cm×세로 54cm)



도판 8. 戶口單子 例 8

〈例 8〉(筆者)

道光二十六年 月 日 全州府

考丙午成籍戶口帳內所陽面黃雲里第九統第四戶幼學張致福年四十九戊午本仁同  
 父學生 得起

祖郎廳 有寬  
 曾祖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漢發  
 外祖學生金平三本盆城  
 妻蔡氏齡五十丁巳籍平康  
 父學生 大弘  
 祖通政大夫 得海

籍

先朝高宗皇帝元統二年二月...  
 曾祖 漢發 字 漢發 籍 平康  
 外祖 金平三 字 盆城 籍 平康  
 妻 蔡氏 字 齡 籍 平康  
 父 大弘 字 大弘 籍 平康  
 祖 得海 字 得海 籍 平康  
 曾祖 龍驤衛副護軍 漢發 籍 平康  
 外祖 學生 金平三 籍 平康  
 父 學生 大弘 籍 平康  
 祖 通政大夫 得海 籍 平康

首孫元先

曾祖折衝將軍 雨龍

外祖通政大夫崔允起本草溪

癸卯戶口相準印

府官(手決形印)(周挾無改印 1, 官印 1)

위의 例 8 은 起頭(序頭)의 記載를 보면 마치 准戶口처럼 보인다. 그러나 年號로 表示했으나 月의 記載가 없고 統·戶數의 記載는 다른 書體로 후에 써넣었으며, 앞의 例 5 에서 보이듯이 後尾에 「癸卯戶口相準印」이라 하였으며, 官印이 하나만 찍혔을뿐 아니라 戶口單子의 記錄方式인 列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文書는 戶口單子로 단정할 수 있다. 즉 戶口單子의 제출자가 序頭를 准戶口의 그것을 본따서 記載한 것이라 보겠다. 戶籍事務의 擔當者는 이 戶口單子를 검토하고 記載事項에 修正된 것이 없으므로 「周挾無改印」을 찍고, 編戶를 하여 九統四戶라 統·戶數를 써넣고, 府官의 手決形을 찍고, 확인·대조를 마쳤다는 의미로 官印을 한곳에 찍은후 提出者에게 還付한 것이라 하겠다. (가로 59.5cm×세로 44.5cm)

〈例 9〉(筆者)

禿洞面第一禿洞里第六統(統首私奴元先)

第二戶幼學盧尙樞年三十二丙寅 本安康

父通德郎 渚

祖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行慶尙左道兵馬節度使 啓禎

曾祖贈嘉義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聖賓

外祖學生趙達經 本豐壤

妻徐氏年二十四甲戌 籍達城

父幼學 麟復

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宗屋

曾祖學生 震泰

外祖學生張宗一 本玉山

弟尙憶年二十五癸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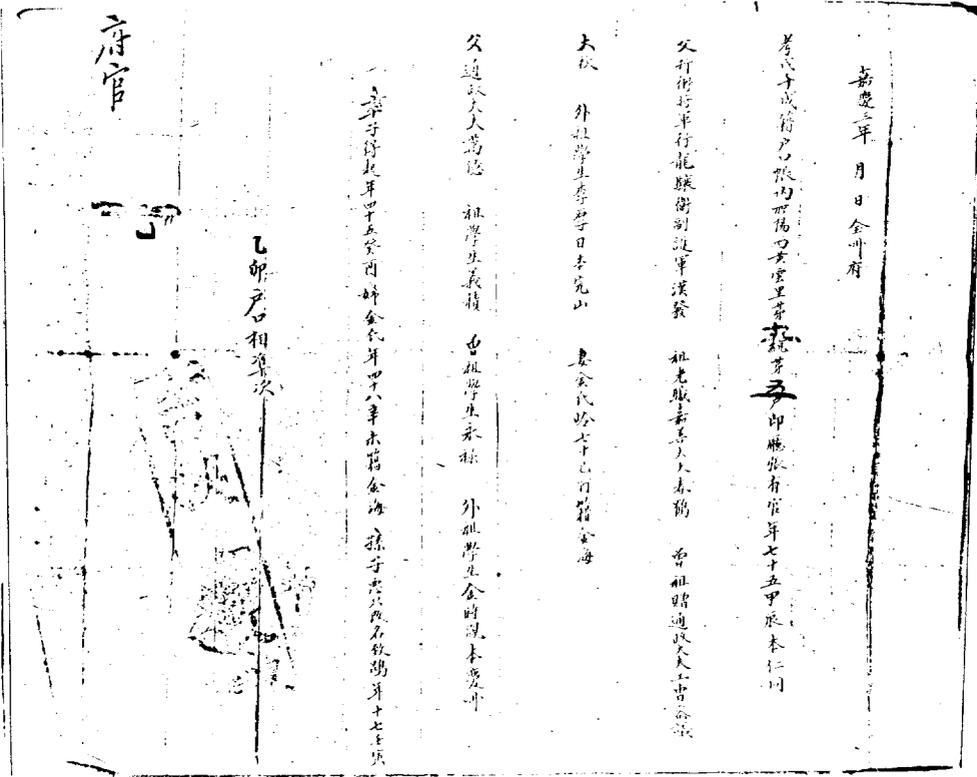
嫂姜氏年二十五癸酉 籍晉州

子鳳曾年七辛卯

仰役奴德翌年癸酉父私奴眞杰母班婢占化奴守江年壬子父奴富貴母班婢二郎 買得婢聖每年 己巳父私奴論先母私婢命丹(以下 奴婢 30口 省略) 甲午戶口相準

行府使(手決)(周挾無改印 1, 官印 1)

위의 例 9 는 「某面某里」 다음에 「戶口單子」라 記載하지 않고 바로 統數를 써넣었으나, 記載方式은 戶口單子式 그대로 列書하고 있다. 奴婢의 記載는 列書하는 경우도 앞에서 보았으나, 連書하는 경우도 흔히 볼수 있으며, 戶口單子式에서도 連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앞의 경우와 같이 戶籍事務 담당자에 의하여 확인·대조되어 이 戶에 살고 있는 사람위에 朱點을 치고 「周挾無改印」을 찍고 府使의 手決·官印(1個處)을 친후 提出者에게 還付된 戶口單子이다. (가로 70cm×세로 58cm)



도판 10. 戶口單子 例 10

<例 10> (筆者)

嘉慶三年 月 日 全州府

• 考戊午成籍戶口帳內所陽面黃雲里第九統第五戶郎廳張有官年七十五甲辰本仁同 父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漢發 祖老職嘉善大夫春鶴 曾祖贈通政大夫工曹參議大秋 外祖學生李厚日本完山 • 妻金氏齡七十七己酉籍金海 父通政大夫萬億 祖學生義積 曾祖學生永祿 外祖學生金時鳳本慶州

• 率子得起年四十五癸酉 • 婦金氏年四十八辛未籍金海 • 孫子烈只改名致鵬年十七壬寅 乙卯戶口相准次

府官(手決形押) (周挾無改印 1, 官印 1)

위의 例10은 年號를 쓴 것이나 起頭를 「考某年成籍戶口帳內某面某里」로 쓴 것, 連書한 것 등은 准戶口와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例 8에서와 같이 年號는 썼으나 「某月」의 記載가 없고, 統・戶數를 뒤에 써 넣었으며 連書한 것 같으면서 連書도 아니고 列書도 아니다. 또 이 戶內의 살아있는 사람 위에는 朱點을 찍은 것도 앞에서 보았듯이 戶口單子의 확인・대조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밖의 것은 例 8, 例 9와 같다. 즉 例 10은 戶口單子式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作成・提出된 戶口單子이다. (가로 59cm×세로 50.5cm)

# 行都

先... 此

三 幼學徐相奎年四十五戊戌生本達城

父幼學 攀淳

祖學生 仁輔

曾祖學生 有培

外祖學生金得福本金海

妻金氏齡三十九甲辰生籍漢陽

父學生 宗憲

祖通德節宣恩將軍行忠武衛副司正 處行

曾祖嘉善大夫... 無五衛都... 報賜

外祖學生朴尚得本咸陽

率子鳳坤年二十三庚申生

... 年六十壬午生丁酉年逝止

... 年四十九甲午生

도판 11. 戶口單子 例 11

〈例 11〉(筆者)

光緒八年壬午式密陽府穿火面美羅里第二統  
 三戶幼學徐相奎年四十五戊戌生本達城  
 父幼學 攀淳  
 祖學生 仁輔  
 曾祖學生 有培  
 外祖學生金得福本金海  
 妻金氏齡三十九甲辰生籍漢陽  
 父學生 宗憲

祖通德郎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正 處行  
 曾祖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總管府行通訓大夫 挺協  
 外祖學生朴尙得本威陽  
 率子鳳坤年二十三庚申生

奴今丹年六十一壬午生丁酉年逃亡

婢春心年四十五戊戌生丁酉年逃亡

婢卜每年四十九甲午生

行都護府使(手決形押) (周挾無改印 1, 官印 1)

위의 例11은 「某面某里」 위에 「光緒八年壬午式」이라 쓴 것이 앞의 戶口單子例나 戶口單子式과 다르지만, 統·戶數를 후에 써넣은 것, 「周挾無改印」「官印」「手決形押」등을 한 것은 앞의 여러 例와 같고, 列書한것등도 戶口單子式을 따른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戶口單子の 記載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밖에도 조금씩 그 記載方式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原文書를 보면 그것이 戶口單子인지 准戶口인지는 쉽게 구별될 수 있다. 구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① 戶口單子式에 의한 것, ② 記載事項(戶主內外와 그 四祖·其他家族 등)을 列書(別行書)한 것, ③ 記載內容에 비하여 用紙가 넓은 것, ④ 官印이 없거나 1개만 있는 것, ⑤ 戶內의 살아있는 사람의 記載위에 朱點이나 墨點을 찍은 것, ⑥ 戶內의 人口數 또는 男女人口數를 文書下端 餘白에 記載한 것, ⑦ 統·戶數를 뒤에 써 넣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의 한두 가지만 부합되어도 戶口單子일 가능성이 높다.

### III. 准 戶 口

「准戶口」란 戶口帳(帳籍)에 准(의거)하여 官에서 贍給하는 文書를 뜻한다. 오늘날의 戶籍贍本과 住民登錄贍本의 性格을 함께 갖고 있는 문서이다. 따라서 准戶口는 戶主의 申請에 의해서 發給되는 것이 특징이다. 准戶口는 앞서 言及된 바와 같이 ① 訴訟時 또는 成籍時의 添付資料로서, 또는 ② 奴婢所有(推刷)의 資料로서, ③ 身分의 證明(役과 관련) 및 家門誇示의 資料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贍給받게 된다.

고려시대에도 戶口單子와 더불어 戶口帳(帳籍)에 准(의거)하여 贍給해주는 准戶口가 있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准戶口 原本은 찾아볼 수 없고 筆寫本이나 族譜에 轉載된 戶口관계 자료를 통해 그 모습을 더듬어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准戶口」란 用語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經國大典에서 「准戶口式」이 나오므로 「准戶口」라는 文書名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准戶口」란 文書名이 經國大典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및 조선초기에 있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11)</sup>

(11) 고려 후기 및 조선초기의 准戶口(寫本·轉載)의 起頭를 보면 「年號月日某部上某里 某(干支)年

朝鮮初期 文物制度가 많이 整理되었으나 戶口관계 格式은 아직도 고려시대의 舊制를 쓰고 있어 改定의 必要가 있었으며 結局 世宗 10년에 准戶口의 規式이 定하여 졌다.<sup>(12)</sup> 이에 의하면 「准戶口」는 京中은 漢城府에서 外方은 各官守令이 戶首(戶主)의 申請(狀告)에 의하여 發給하되 1통은 立案(准戶口發給簿)에 粘連하여 官府에 보관하고 1통은 신청한 戶主에게 주되 疊給은 못하도록 하였다. (戶主에게 준것이 신고용인 戶口單子 2통중의 1통이라던 疊給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世宗 10년의 准戶口式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某年號月日戶口准府<sup>①</sup>  
 在某年成籍戶口帳內某部某坊第幾里 外方某面某里 住某職姓名年甲本貫四祖妻某氏年甲本貫四祖率居<sup>②</sup>  
 子息某某奴婢某某等准給者<sup>③</sup>  
 漢城府外方某州縣僉署<sup>④</sup>  
 周挾改字數及有無橫書踏印<sup>⑤</sup>

그후 經國大典에 規定된 准戶口式은 다음과 같다.<sup>(13)</sup>

- B. 某年月日本府<sup>①</sup> 外則稱本<sup>②</sup>  
 州本郡  
 考某年成籍戶口帳內某部某坊第幾里 外則稱某<sup>③</sup>  
 面某里  
 住某職姓名年甲本貫四祖妻某氏年甲本貫四<sup>④</sup>  
 祖率居子女某某年甲奴婢某年甲等准給者<sup>⑤</sup>  
 漢城府 須備<sup>⑥</sup> 三員 堂上官押 城下官押 外則稱某<sup>⑦</sup>  
 邑某職  
 周挾改幾字 無則<sup>⑧</sup> 橫書經印<sup>⑨</sup>  
 云無<sup>⑩</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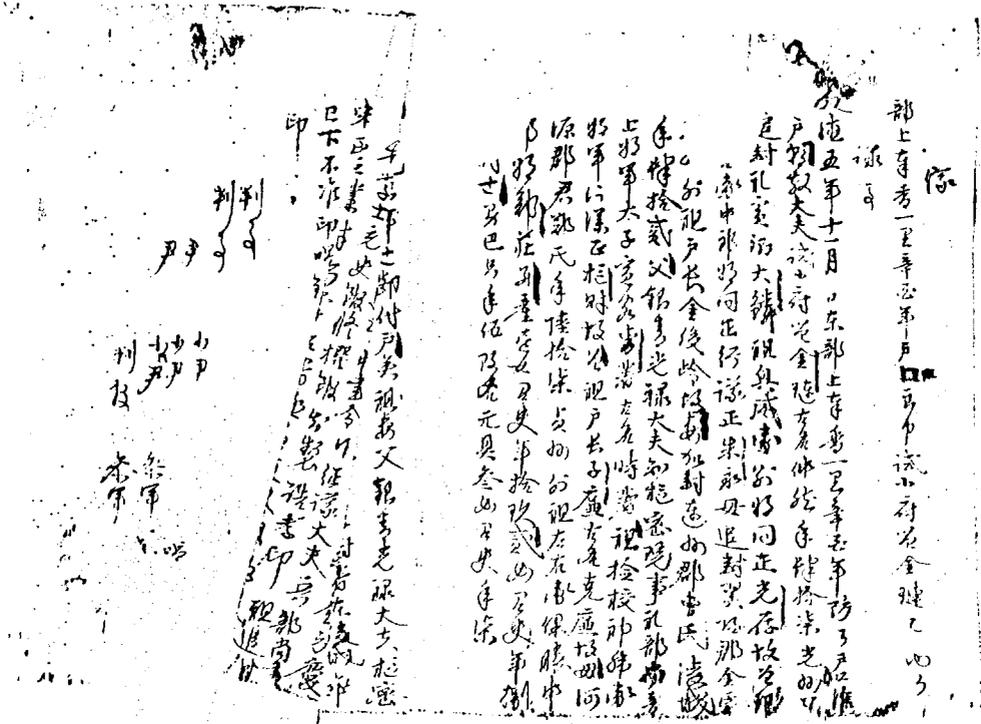
위의 世宗10년의 「准戶口」와 經國大典의 그것을 비교하면 後者는 前者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A·B 모두 ①은 准戶口를 騰給하는 年月이고 年號를 쓰며, ②는 准戶口를 騰給하는 官府이며, ③은 准據로 삼은 戶口帳이며, ④는 住所이며 ⑤는 戶主와

戶口准」(《光山金氏烏川古文書》, 《密陽朴氏漢城公派譜》, 《海州崔氏大同譜》, 許興植氏 前揭書 p. 167, 182, 222참조)으로 되어 있는데 「戶口准」이라 한 것은 「准戶口」임을 알 수 있다.

(12) 世宗實錄 卷40 世宗10年 5月 癸丑 戶曹啓 各人戶口 京中漢城府 外方各官守令 據其狀告成給 其規式則 某年號月日戶口准府 在某年成籍戶口帳內 某部某坊第幾里 外方某面里 住 某職姓名年甲本貫四祖 妻某氏年甲本貫四祖 率居子息某某 奴婢某某等 准給者 漢城府 外方某州縣 僉署 周挾改字數及有無 橫書踏印 一本粘連立案 一本給狀告戶首 毋令疊給 從之

(13) 經國大典 禮典의 「准戶口式」 내의 「某里某坊云云」의 云云부분은 그 앞의 「戶口式」의 「某坊」이 후부분과 같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은 「戶口式」에 의해서 채워넣은 것임.

그 四祖, 妻와 그 四祖, 率居子女, 奴婢等 戶口記載의 核心內容이며, ⑥은 准戶口의 結辭이며, ⑦과 ⑧은 准戶口를 發給하는 官府의 官員과 그들의 押(手決)이며, ⑨는 訂正與否의 表示로서 몇字를 고쳤는지 與否를 비스듬히 쓰고, ⑩은 官印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形式을 갖인 문서는 官府에서 發給하는 「准戶口」인 것이다. 准戶口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戶口記載 內容을 列書하지 않고 連書하는 것이다. 「戶口單子」에서는 戶主內外와 그 四祖 등을 각각 別行으로 記載하지만(列書) 「准戶口」에서는 連書(연이어서 씌)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려시대의 准戶口의 樣式은 現存하는 原文書가 없기때문에 確實히 알 수는 없으나, 筆寫本이나 族譜에 轉載된 것에 의하면 앞의 准戶口式에서 ①, ③, ④, ⑤, ⑦, ⑧등의 要素와 連書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准戶口의 特徵은 그것이 官府에서 贈給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官印이 찍히며 官印의 數는 대개 准戶口(用紙)의 크기에 따라서 최소 1個處로부터 수십個處(光山金氏烏川古文書에는 25個가 찍힌 准戶口가 있다)에 이르는 것도 있다.(官印의 數는 반드시 홀수로 하였다.)



도판 12. 准戶口例 例 1

〈准戶口 例〉

〈例 1〉(光山金氏烏川古文書)<sup>(14)</sup>

(14) 앞서 註10에서 언급했듯이 이 寫本은 戶口單子와 准戶口가 뒤섞여 있는데, 이 寫本의 後尾 部分이 准戶口에서 發給官府 및 그 官員의 記載와 手決(押)이 있을 부분에 해당하므로, 「判事」,

部上奉香一里辛酉年戶口良中試小府監金璉乙內??事

大德五年十一月 日 東部上奉香一里辛酉年防了戶口准

戶朝散大夫試小府監金璉古名仲龍年肆拾柒光州父追封禮賓卿大麟祖興威衛別將同正光存故曾祖 金吾衛  
中郎將同正行隊正朱永母追翼陽郡金氏光州外祖戶長金後崐故妻加封連州郡 曹氏 凌城年肆拾貳父銀青光  
祿大夫知樞密院事禮部尙書上將軍太子 賓客曹著古名時著祖檢校神虎衛將軍行僕正樞財故曾祖 戶長子廉  
古名克廉故母河源郡鄭氏年陸拾柒貞州外祖左右衛保勝中郎將鄭莊并產 壹女 召史年拾玖貳女召史年捌節  
付壹男巴只年伍改名元具參女召史年柒 (以下缺)

判事

判事

尹 少尹

尹 少尹 唱主事金永富

少尹 參軍 准知印金賁龍

判官 參軍

위의 准戶口는 開城府에서 1301년(大德 5)에 謄給되었고, 准據한 戶口帳은 東部に 올린 (있는) 1261년(辛酉)에 成籍된 것이며(戶主金璉이 죽은지 10년후에 謄給된 것) 住所는 奉香一里이다. 戶口の 記載는 戶主의 職役·姓名·年·本貫, 父·祖·曾祖의 職役·名, 母의 姓氏·本貫, 外祖의 職役·名, 妻와 그 父·祖·曾祖·母·外祖, 그리고 率居한 子女順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 准戶口를 발급하는 開城府의 모든 官員이 記載되고 그 중 堂上·堂下 몇명이 署押(手決)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戶口帳과의 대조자(唱·准)가 記載되고 있다.(原本에는 數個處에 官印이 찍혀있었을 것이다.) 이 資料는 寫本이고 完전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고려후기의 「准戶口」의 樣式과 「戶口帳」의 記載方式을 전해주는 자료로 생각된다. 즉 「戶朝散大夫~參女召史年柒」은 1261년(辛酉)의 戶口帳의 記載方式이며 「部上...事大德 五年...戶口准」과 開城府僉員의 表示, 唱准의 記載 등은 1301년의 准戶口の 樣式을 傳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准戶口에서 起頭式과 戶口記載 順序가 조선시대의 그것과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나 內外四祖를 쓰는 것은 같으며, 특히 列書하지 않고 連書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

<例 2> (族譜에 轉載된 准戶口の 起頭部)

① 《驪州李氏小陵公派譜》

中郎將公丁酉戶籍

宋嘉熙元年丁酉 理宗十三年麗高宗二十四年 北部興國里戶部將同正李喬古名唐柱年五十一丁未生 印本無本黃驪 (四祖·

妻·四祖·率子女).

② 《密陽朴氏漢城公派譜》

部上洪道六里壬子年戶口良中檢校大護軍朴得賢乙准爲內教洪武五年四月日中部上戶口准

「尹」, 「少尹」, 「判官」, 「參軍」등 開城府 官員(僉員)의 記載부분을 筆者의 판단에 따라 뒤에 붙인 것이다.

위의 例에서 ①의 경우는 여러차례에 걸친 轉載과정에서 고려시대의 准戶口의 原形은 잃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②의 경우는 例1의 起頭와 거의 一致하는 것을 보아, 例1과 例2의 ②가 고려후기 准戶口의 原形을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와같은 形式은 조선개국후 상당기간(20~30년)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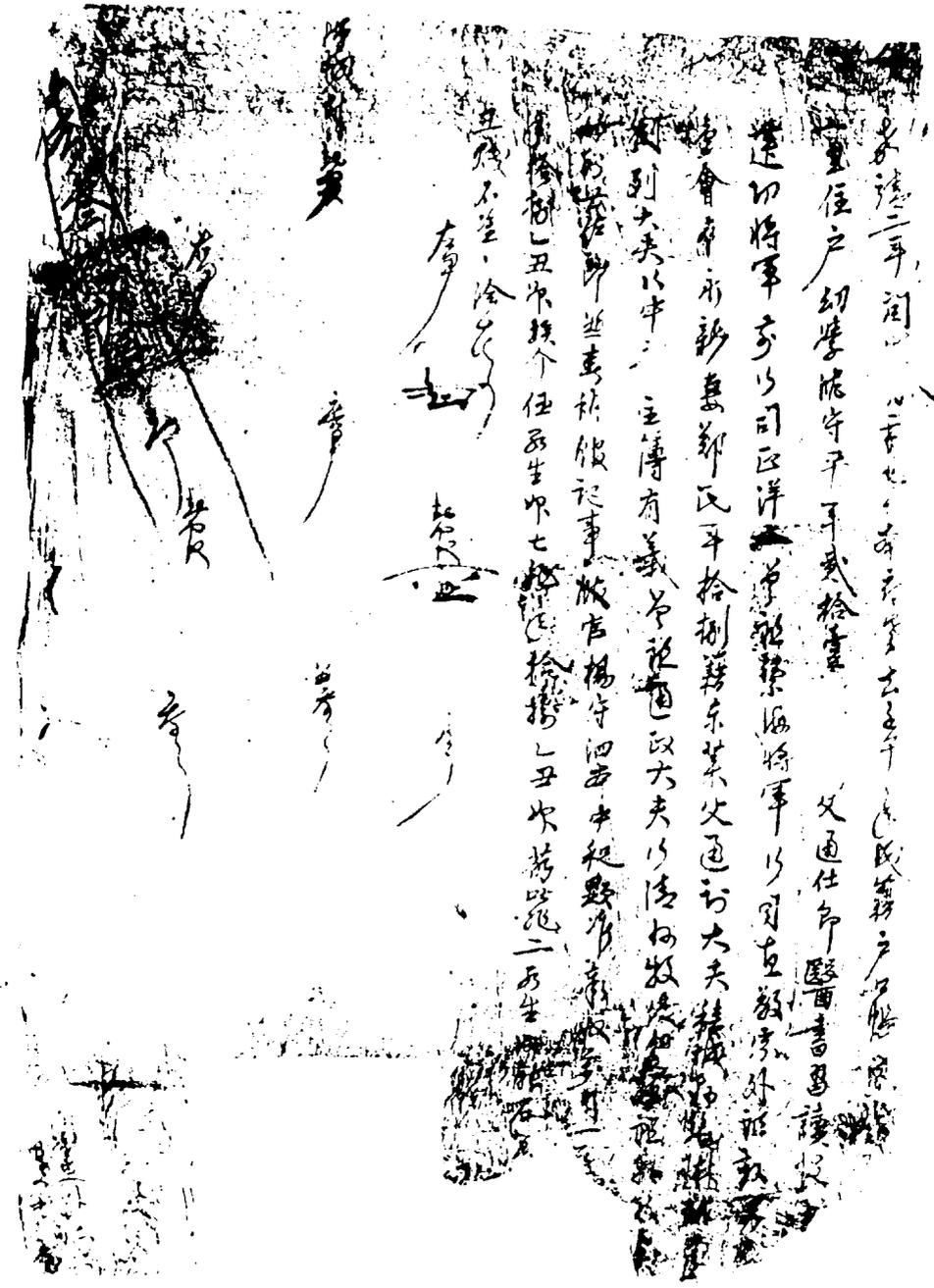
도판 13. 准戶口 例 3

<例 3> (朝鮮史料集眞, 朝鮮總督府刊 1936)<sup>(15)</sup>

弘治二年庚戌七月日端川郡口准南面波獨只里住

戶忠實衛宣略將軍佐衛前部副司猛沈洋年四十參木青松父禦侮將軍行司直敬宗故祖進勇校尉行司正彦冲故曾祖原從功臣嘉善大夫工曹典書之伯率母童氏年七十一本端州外祖奉列大夫童安美故戶妻李氏年四十九本完山父李明仁故祖奉列大夫行敦寧府判官楊德故曾祖原從功臣嘉善大夫左軍同知摠制蘭卒母張氏年陵拾捌本永興府外祖進勇副尉右軍司正張自義故戶并產一女沈氏年二十四一男都也之年十三父母同胎妹沈氏故次妹沈氏異母妹山非次弟大中妻父邊傳來奴波豆年六十三戊申生(奴婢6口略)妻母邊傳來婢石非年四十八癸亥生同婢二所生婢其每年三十二庚辰生印右夫妻合錄成化十三年丁酉十二月日端川郡戶口相考准給印

(15) 이 資料중 沈洋·沈守平의 戶口관계 資料는 渡邊業志·崔弘基·許興植氏 등에 의해서 이용된바 있다.



三卷 14. 准戶口例 4

昌書員徐(手決)

准記官金(手決)

行端川郡守(手決) 監考進勇校尉前旅帥童(手決)

(周挾改無橫書 官印 5 個處踏)

弘治 2 年(1489)은 己酉年이고 弘治 3 년이 庚戌年이다. 弘治 2 년은 3 년의 謄記가 아  
닌가 한다. 위의 例는 經國大典頒布직후의 「准戶口」인데, 經國大典의 「准戶口式」과 起頭가  
다르다. 經國大典의 式에 맞추려면

弘治三年七月日端川郡

考某年成籍戶口帳內淮南面波獨只里住 云云

이 되어야 한다. 그밖의 記載內容에 있어서도 「准戶口式」과 약간 다른 것이 있다. 그러나  
准戶口로서 갖추어야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특히 連書, 대조자(唱・准)・담당자(監  
考)의 記載, 周挾無改(訂正無)의 橫書, 郡守의 手決, 官印 5 個處踏 등 官府에서 發給하는  
文書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例 4〉(朝鮮史料集眞 所載)

嘉靖二年閏四月二十九日本府考去壬午年成籍戶口帳<sup>內</sup>□□□北部□□□一里住幼學沈守平年貳拾壹□□□父  
通仕郎醫書習讀官□□建功將軍前行司正洋曾祖禦侮將軍行司直敬宗外祖敦勇□□金會本永新妻鄭氏年  
拾捌籍東萊父通訓大夫積城縣監琳□□列大夫行中部主簿有義曾祖通政大夫行清州牧使聚外祖朝散大夫  
行刑曹佐郎兼春秋館記事官楊守泗本中和顯准率奴萬□一所□年拾捌乙丑婢族介伍所生婢七非年拾捌  
乙丑婢芴叱非二所生奴能石年□□丑賤不准准給者

左尹(手決) 判官(手決) 參軍

漢城府判尹 庶尹 兼參軍

右尹 判官 參軍

准吏林(手決)

唱吏李(手決)

(周參挾改無印, 官印 5 個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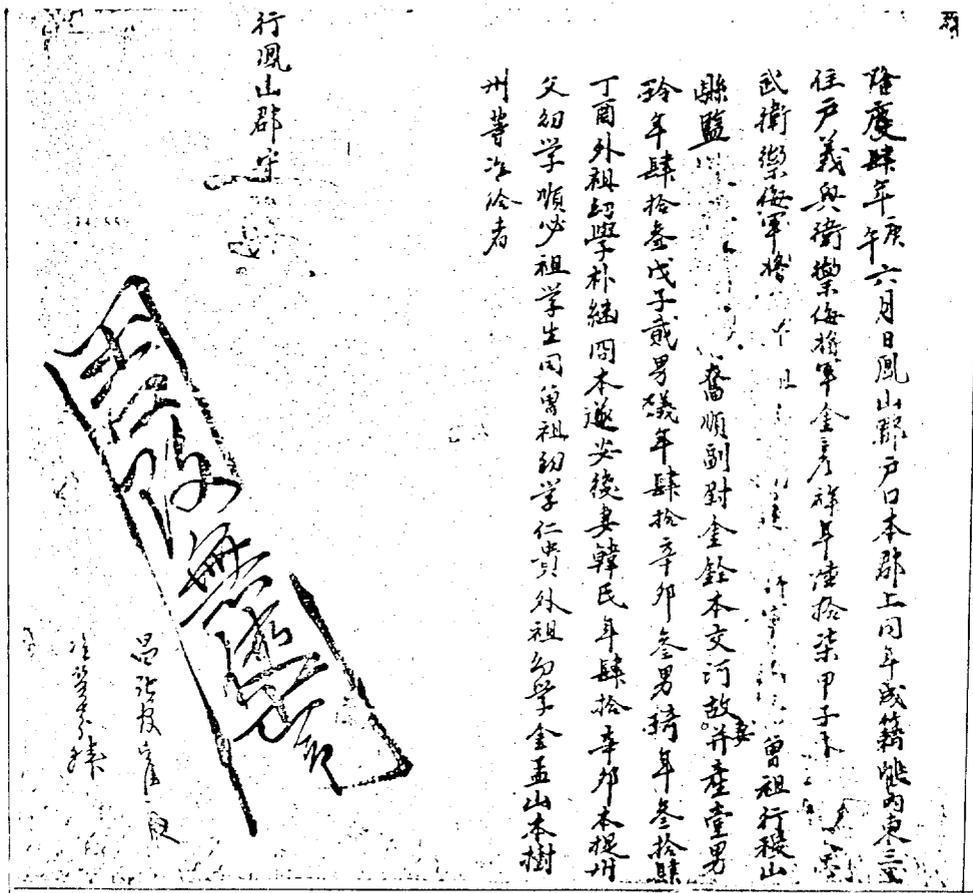
위의 例는 經國大典 准戶口式에 거의 一致하는 것을 볼수 있다. 漢城府 僉員을 記載하고  
그중 堂上 1 員(左尹), 堂下 1 員(判官)이 押(手決)하였다.(後期에 오면 僉員의 記載는 없어  
지고 堂上・郎廳・監董官의 記載와 手決이 있게 된다.) 記載중 3 字를 訂正한 表示를 하였고  
5 個處에 官印을 찍었다.

〈例 5〉(서울大 No. 141882)

隆慶肆年庚午六月 日鳳山郡戶口本郡上同年成籍帳內東山里住戶義興衛禦侮將軍金彥祥年陸拾柒甲子本  
安東(四祖・妻・四祖 省略)等准給者

行鳳山郡守(手決) (周改無挾壹印)

昌記官崔(手決)



도판 15. 准戶口 例 5

准監考韓(手決)

위의 例는 1570년에 鳳山郡守가 發給한 准戶口로서, 經國大典이 頒布된지 80여년이 지난 후의 것이지만 아직도 고려말 조선초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본다. 즉 發給官府와 准據帳籍의 記載가 經國大典의 것과 달리 「鳳山郡戶口本郡上同年成籍帳內」로 되어 있다. 朝鮮시대의 准戶口가 經國大典의 准戶口式을 철저히 따르게 되는 것은 壬辰倭亂以後(17世紀初)부터로 보인다.

<例 6> (筆者)

康熙五年十二月 日 星州牧

考丙午成籍戶口帳內南面沙等谷坊柳村里住

戶從仕郎鄭昌址年貳拾陸卒辛巳生本清州父承議郎惟熙祖通訓大夫行全羅道都事兼春秋館記注官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韓曾祖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世子輔養官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諡文穆公述外祖

嘉熙五年十二月

考向才成籍名白廳內南沙寺各坊村村生

經任印齋昌地年官拾陸陸邑邑本清州父義印惟熙祖通訓大夫行全羅道都事諱春叔館記注

贈通文大夫政院都承旨諱陸陸邑邑本清州父義印惟熙祖通訓大夫行全羅道都事諱春叔館記注

院府大司憲諱昌子輔養官贈大匡輔國忠肅大夫諱政有制諱政顯領經廷

象監事世子師諱文程公遠外祖宣教郎郭宗慶奉公風生父通德郡行顯慶奉公性孝其年可拾

宗康辰生昌全義父奉直郎現祖頭政大行昌原大護國府使之奉直祖通訓大夫行軍器監

院大夫承元陸王承吉諱經廷承元官宗外祖通訓大夫行振威縣令奉直祖通訓大夫行軍器監

父賜於奉山母祥輝行春輝五月丙申故輝上祀其位格其奉直生父其妻中任母祥輝其奉直化其奉直

父三同叔祖上其年於奉直生父三同叔祖上其年於奉直生父三同叔祖上其年於奉直生父三同叔祖上

父全母祥輝遠德信承公輝亦五年祥輝五年祥輝五年祥輝五年祥輝五年祥輝五年祥輝五年祥輝五年

男母祥輝春任昌風收庚申年祥輝拾丁卯生父收庚申年祥輝拾丁卯生父收庚申年祥輝拾丁卯生

輝上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

年春收庚申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

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

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

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

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

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

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

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

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生父收庚申年祥輝拾伍乙亥

康熙二十九年九月日南海縣

考辛酉成籍戶口帳內邑內面鄉校洞第七統第四戶納粟通政鄭

海立年十八甲午奉晉州父納粟通政心希祖記官產浩曾祖

連外祖正徐龍本大丘妻李多更年十八甲午奉晉州父正產

祥祖正招順曾祖正外祖正李業由 年 呈 同 奉 孫 書

貞鄭孝成年二十四戊戌年 年 呈 同 奉 孫 書

行縣令

宣敎郎郭宗慶本玄風生父通德郎行顯陵參奉惟燕 妻 李氏年貳拾柒庚辰生籍全義父奉直郎玩祖通政大夫行  
 呂原大都護府使之華曾祖通訓大夫行軍威縣監贈通政大夫承政院左 承旨 兼經筵參贊官宗文外祖通訓大夫  
 行振威縣令李善述本完山奴下男年陸拾柒庚子生父私奴奉山母班婢汗春 (以下 奴婢 55口 省略) 等准給者  
 星州牧使 (手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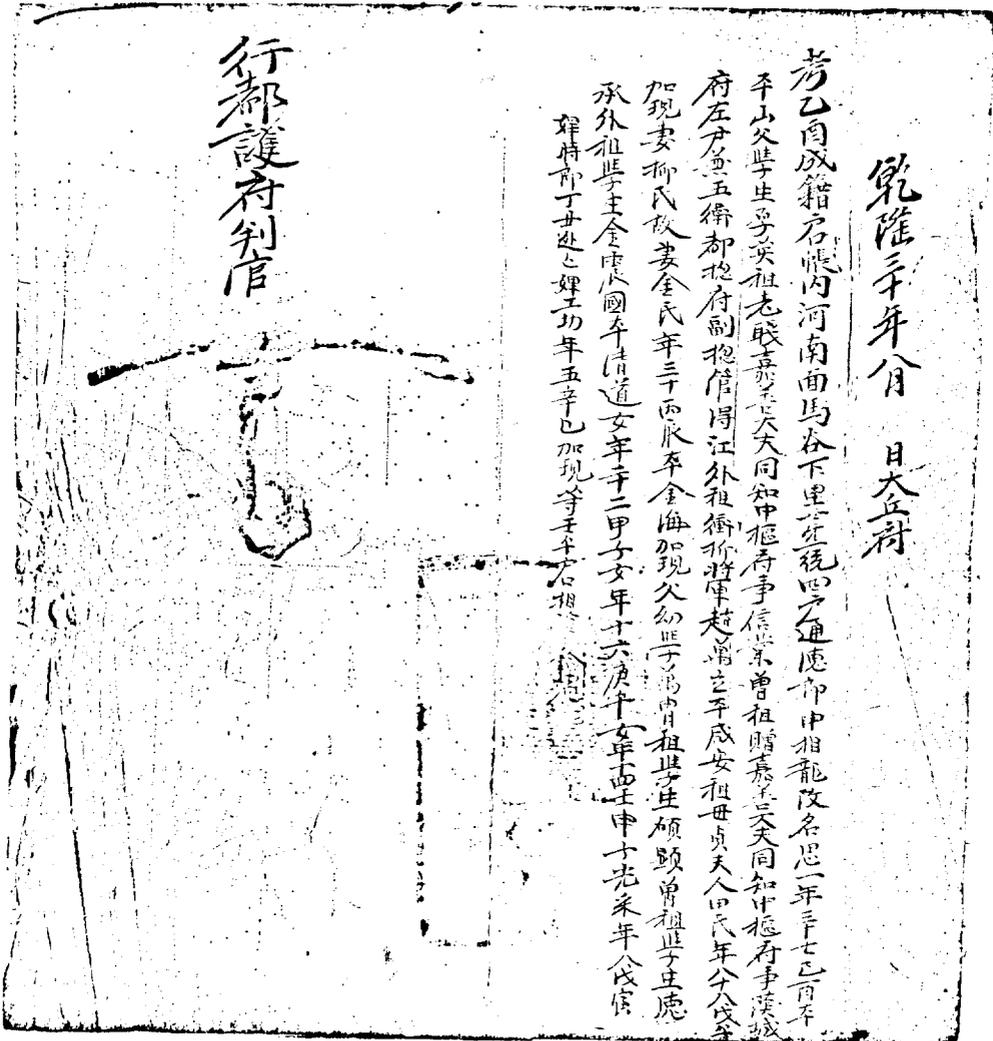
(周挾無改印 1 個, 官印 7 個處)

위의 例는 經國大典의 准戶口式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例 7> (筆者)

康熙二十年九月日南海縣

考辛酉成籍戶口帳內邑內面 鄉校洞 第七統第四戶納粟通政心希祖記官彥浩曾祖連外祖正徐龍本大丘妻李召  
 史年八十八 甲午本星州父正彥祥祖正哲順曾祖正外同外祖正李業申本星州率孫吾員鄭孝成年二十四戊戌



도판 18. 准戶口 例 8

等戊午戶口准給  
行縣令(手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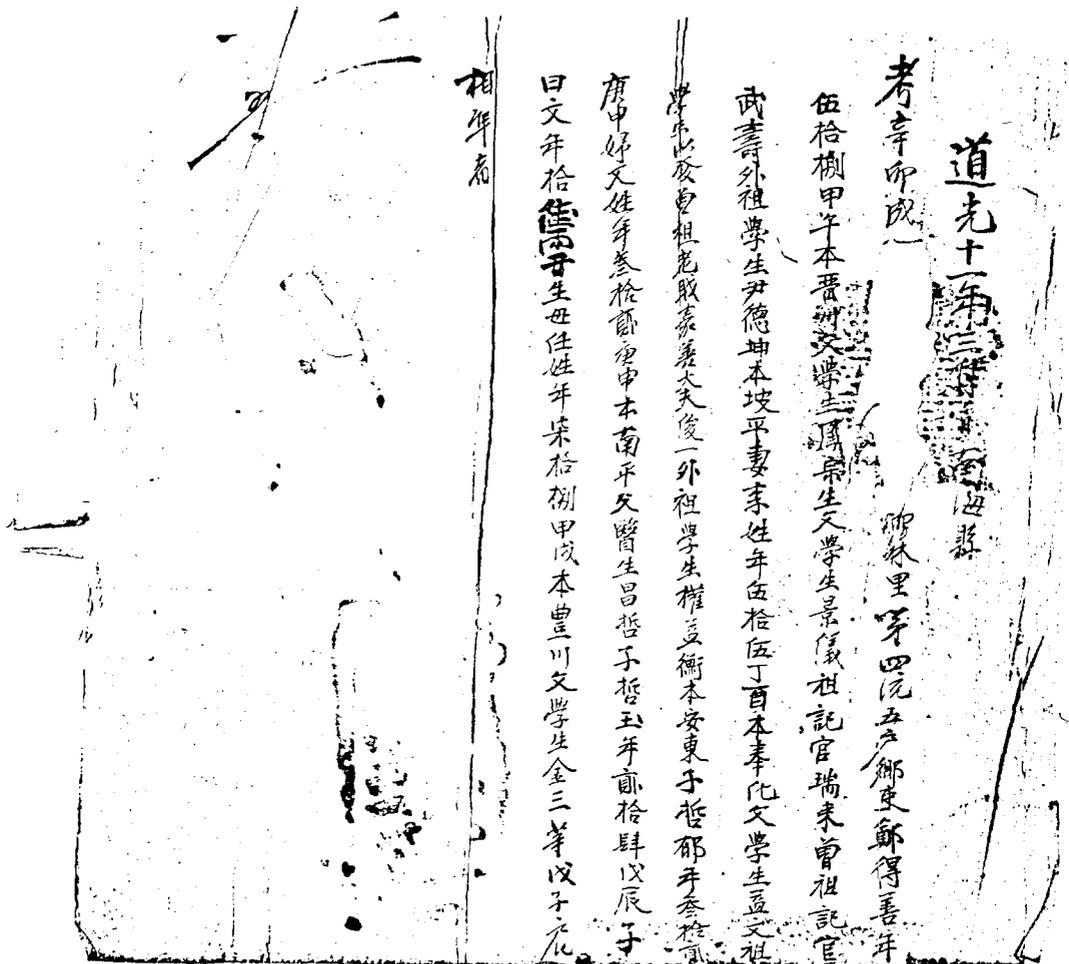
(周挾無改印, 官印3個處)

위의 例에서는 住所에 統·戶가 記載되고 있으며, 이후 모든 准戶口에서 統·戶數가 記載되고 있다.

〈例 8〉(筆者)

乾隆三十年八月 日 大丘府

孝乙酉成籍戶口帳內河南面馬谷下里第一統四戶通德郎申相龍改名思一年三十七己酉本平山父學生厚英祖老職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信業曾祖贈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漢城府左尹兼五衛都總府副總管得江外祖折衝將軍趙萬立本威安祖母貞夫人田氏年八十八戊午加現妻柳氏故妻金氏年三十丙辰本金海加現父幼學萬胄祖學生碩顯曾祖學生德承外祖學生金震國本清道女年二十二甲子女年十六庚午女年十四壬申子光采



도판 19. 准戶口 例 9

年八戊寅

婢時郎丁丑逃亡婢工功年五辛巳加現等壬午戶口相准給者  
行都護府判官(手決)  
(周挾無改印 1, 官印 1 個處)

위의 例도 經國大典의 准戶口式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例 9> (筆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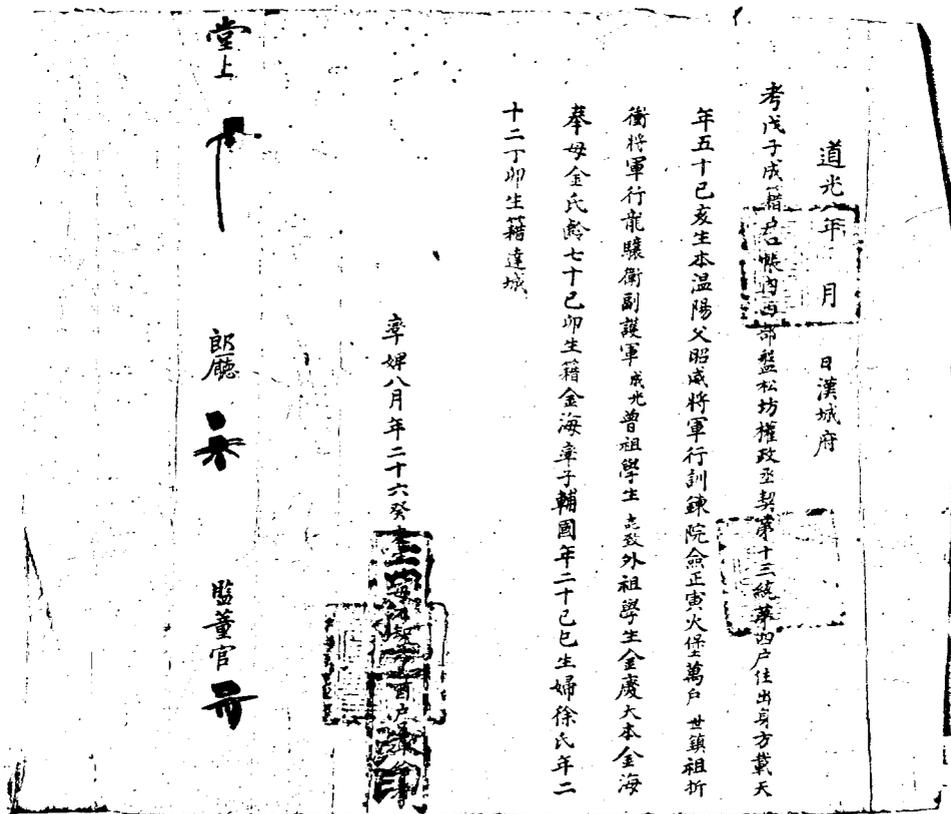
道光十一年 三月 日 南海縣

籍戶口帳內邑內面

考辛卯成 柳林里第四統五戶鄉吏鄭得善年伍拾捌甲午本晉州父學生鳳宗生父學生景儀祖  
記官瑞來曾祖記官武壽外祖學生尹德坤本坡平妻李姓年伍拾丁酉本奉化父學生 益文 祖學生以發曾祖老職  
嘉善大夫俊一外祖學生權益衡本安東子哲郁年 參拾貳 庚申婦女姓年參拾貳庚申本南平父醫生昌哲子哲五  
年貳拾肆戊辰子曰文年 拾伍 丁丑生母任姓年柒拾捌甲戌本豐川父學生金三等戊子戶口相准者  
行縣令(手決)

(周挾無改印 1, 官印 1)

위의 例 9는 戶口單子 例 3 과 同一한 戶主에게 같은 해에 發給된 准戶口로서, 이 鄉吏家



도판 20. 准戶口 例 10

門에는 이처럼 同一戶主의 同一年度の 戶口單子와 准戶口가 多數 전해지고 있다(筆者所藏).<sup>(16)</sup>

〈例 10〉(筆者)

道光 八年 月 日 漢城府

考戊子成籍戶口帳內西部盤松坊權政丞契第十三統第四戶住出身方載天年五十己亥生本溫陽父昭威將軍  
行訓練院僉正寅火堡萬戶世鎮祖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成光曾祖 學生志致外祖學生 金慶大本金海奉母  
金氏齡七十己卯生籍金海率子輔國年二十己巳生婦徐氏年二十二丁卯生籍達成

率婢八月年二十六癸亥生父母不知等乙酉戶口準給者

堂上(手決) 郎廳(手決) 監董官(手決)

(周挾字 改印 1, 漢城府印 3)

#### IV. 맺 음 말

古文書를 史料로 利用하는 일은 必須의인 일이지만, 이에 앞서 古文書에 대한 精確한 理解가 必要하다. 古文書의 性格과 用語에 대한 確실한 理解없이 古文書를 利用하는 일은 연구결과에 적지않은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古文書가운데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戶口관계자료에 대한 理解도 缺如되어 있으므로 그 用語도 統一되지 못하였고 誤用되기 일쑤였다 戶籍原簿도 戶籍, 戶口單子(申告書)도 戶籍, 准戶口(謄本)도 戶籍이라 썼고, 그것이 申告用(戶口單子)인지 謄本(准戶口)인지도 分辨하지 못하고 「戶籍」·「戶口」·「戶籍單子」·「戶口單子」·「准戶口單子」·「單子戶籍」·「成給戶籍」·「民間戶籍」등으로 混用·誤用되어 왔다. 이와같은 古文書에 대한 理解의 缺如와 用語의 誤用은 研究성과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當時의 사람들도 戶口관계자료를 막연히 「戶口」 또는 「戶籍」으로 쓴 경우도 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것이 戶口申告書인지 戶口謄本인지를 分明히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戶口申告書는 「戶口單子」로, 戶口謄本은 「准戶口」로 統一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戶口單子」도 「准戶口」도 時代에 따라서 또는 地域에 따라서 그 書式에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으나 本論에서 言及했듯이 두 문서간에는 文書式이 다름 뿐 아니라 각각 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分辨할 수 있는 것이다. 文書의 實例를 많이 들어 놓은 것도 文書의 식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 관계의 자료를 利用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16) 拙稿, 〈朝鮮後期鄕吏身分移動與否考〉, 《金鎭堯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1983. 참조.